

# 폐기물처리 시방서 (기 계)

잠실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(실시설계)

2005. 8.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
(주)성우예종합건축사사무소  
범창종합기술  
태양ENC

## 폐기물처리 시방서(기계)

### 1. 일반사항

- 1.1. 본 과업지시서는 소공 지하도상가 대수선 건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.
- 1.2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하되 용역의 완료는지하도상가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를 말하며 기간(착수시기 및 용역기간 등)은 여건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(계약대상자 이하 용역수행자라 한다.)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1.3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지시에 따른다.
- 1.4 용역수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
- 1.5 용역수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·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대한 보상책임을 지며, 용역에 관한 통지, 연락,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을 경유하여야 한다.
- 1.6 용역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「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」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.
- 1.7 용역수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1.8 용역수행자는 수집·운반사업자, 최종처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9 용역수행자는 폐기물 처리(운반)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받아야 한다.
- 1.10 폐기물처리 실적(수량)은 감독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정산한다.
- 1.11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
- 1.1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,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따르는 허가,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13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식에응하여야 한다.
- 1.14 용역수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, 항상 계획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.15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관련법규정에 타당하여야 한다.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공제조합의 「건설폐기

물처리용역 시방지침서」를 참조한다.

- 1.16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행로 협의 발생 미원등은 용역수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수행한다.
- 1.17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발주청이 요구하는 각종 성분분석 및 폐기물 관련 시험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.

## 2.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

- 2.1 용역수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, 사고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2.2 용역수행자는 공사현장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, 출입문, 출입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2.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,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.

## 3.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

- 3.1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,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,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3.2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.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공사작업 중에 소음, 진동, 비산, 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3.3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사유 또는 공공시설,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- 3.4 용역수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3.5 용역수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가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.

### 4. 용역의 일시중지

- 4.1 발주청과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.
  - 4.1.1 대상 구조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할 때
  - 4.1.2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
  - 4.1.3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

4.1.4 인근시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## 5.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

5.1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. 이때는 증가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.

## 6. 제 법규의 준수

6.1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, 노동조합법, 직업안전법, 재해구호법,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6.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.

## 7. 작업시간

7.1 용역시행의 작업시간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.

7.2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, 단축 또는 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.

## 8. 완료검사

8.1 용역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,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 [착수전·중·후 사진, 계근장, 정산내역서(증빙서류 포함),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8.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(검사자)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.